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및 정책 방향 연구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for Large-Scale Retail Facilities in Suwon

강태욱·김현아

연구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1인 가구 증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축소 등 유통업계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유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 도출 필요
- 특히 수원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의 신규 입점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대규모 유통시설의 수준을 확인하고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수원시의 대규모 유통시설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 수립을 통해 대규모 유통시설, 소상공인 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정책방안을 통해 지역 소매유통산업 전반의 개선과 대응방안 제공

주요 내용 및 결과

- 타 시도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이 다수 조성된 상황으로 소매유통업의 경쟁 과열 예상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지자체, 특례시, 광역시 간 인구와 경제 수준을 고려한 비교 결과, 타 시도 대비 2~5개소가 더 많은 상황
 - 특히, 대규모 유통시설 중 대형마트의 수준이 높은 상황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간 과잉 경쟁을 막고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 점포 수 유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자체 수준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부족
 -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유통산업 입법 동향 및 지자체 규제 사례 탐색 결과,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및 영업제한은 사실상 불가
 - 타 지자체에서 실시한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는 대부분 유통시설의 승소로 이어져 지자체 조례를 통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동향에서도 국내·외 유통산업과 대규모 유통시설의 경쟁력 확보, 소비자 편익을 위해 규제를 축소하는 추세

정책제언

- 수원시 유통산업관리법 내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한시적 유지 필요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은 타 지역 대비 다수 조성된 상황이나, 소매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초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지자체 조례의 한시적 유지 필요
 -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통시설은 온라인에 밀려 다수 폐점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주말과 야간영업 규제 축소 중인 상황으로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무리한 규제 적용으로 인해 지역 유통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유통산업발전법 내 현행규제를 유지하면서 이후 대규모 유통시설 감소 추이에 따른 지역 유통시설 수준 재평가를 통한 신규 정책 적용 필요
 - 지자체 입점·영업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유통시설 규정사항 준수 여부 감시
 - 입점 규제의 빈틈을 노린 입점 및 확장, 면적 규제 회피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규제 적용 및 행정적 조치를 위해 지자체 적극 대응

- 수원시 내 대형마트 폐점 예상되는 지역의 상권 동반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고 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 필요
 - 대규모 유통시설 주변으로 오랜 시간 상권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대규모 유통시설 폐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에 대한 쇠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대규모 유통시설과 지역 소매업체 간 공동상생 방안 마련과 골목형지역상점가 조성 등 지역 상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 필요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 확대 방안 마련
 - 대규모 유통시설 휴일영업 규제 대안으로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
 - 지역 소상공인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 지정요건 완화에 따라 2024년 수원시 4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2개 추가 지정 진행
 -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지자체 정부 추진 사업(상권 환경 개선, 판로확대, 디지털화) 등 공모 활동 지원 확대
 - 사업기획서 작성 지원, 컨설팅 및 활성화 방안 자문, 지자체 지역 홍보, 상인회 조성 지원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신규입점 최소화를 목표로 공공의 이익과 주민 요구 발생 시 추가 설립에 대한 기준 방안 필요

 - 신규 택지 지구 내 대규모 유통시설이 주민 수요로 인하여 조성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위치될 수 있도록 입점 당사자와 지자체 간 적극 논의 필요
 - 입점 규제에 빈틈을 노린 입점 및 확장, 면적 규제 회피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규제 적용 및 행정적 조치를 위해 지자체 적극 대응

- 상권 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사항 여부 점검 및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역할 강화

 -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역할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호 협력방안 마련
 - 대규모 유통시설 상권 영향평가 절차 강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사항 점검
 -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현행 대규모 유통시설의 지역협력계획 이행사항 점검 사항 평가 및 환류 절차 마련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7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적정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관련 선행연구	11
제2절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유통산업 및 정책동향 선행연구	12

제3장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제1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20
제2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수준 도출 방안	25
제3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수준 도출	27

제4장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정책 방향

제1절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정책 현황	37
제2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방안	53

제5장 정책제언

정책제언	64
------------	----

표차례

표 1-1 수원시 대규모 점포개소	5
표 2-1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영향 관련 연구	13
표 2-2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제한 법안 발의	17
표 3-1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현황	20
표 3-2 수원시 유통시설 현황	21
표 3-3 수원시 지역구 별 유통시설 현황	21
표 3-4 수원시 전통시장 현황	24
표 3-5 소매업태 구분	26
표 3-6 경기도 5개 지자체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28
표 3-7 경기도 5개 지자체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28
표 3-8 경기도 10개 지자체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29
표 3-9 경기도 10개 지자체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29
표 3-10 특례시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30
표 3-11 특례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30
표 3-12 광역시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31
표 3-13 광역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31
표 3-14 특례시, 광역시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32
표 3-15 특례시, 광역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33
표 4-1 국내·외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규제사항 비교	41
표 4-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동향	42
표 4-3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도입	43
표 4-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사항	44
표 4-5 이전 지자체 대규모 점포 규제사항	47

표 4-6 대전광역시 유통시설 총량제 5개년 계획	50
표 4-7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관련 분쟁 사례	52
표 4-8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절차 강화	59
표 4-9 2024년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신규지정 현황	60
표 4-10 수원시 추가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대응 방안	61
표 4-11 지역 상점가 지원 성공사례	63
표 5-1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70

그림차례

그림 1-1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정책 수립방안	8
그림 3-1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현황	21
그림 3-2 수원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현황	22
그림 3-3 수원시 백화점·대형마트 조성지역 및 상권 영향	23
그림 3-4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지역 상권 영향	2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경제 변화와 유통산업 수익성 악화

- 3高(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장기화, 소비 둔화, 내수경기 위축, 물가 불안정, 가구부채, 고용 불안 증가 등 경기 악화
 -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서 2022년 5.1%, 2023년 3.6%로 2024년 2.6%로 전망
 - 국가채무액 역시 2018년 681조 원에서 2019년 723조 원으로, 2020년에는 847조 원, 2021년에는 1,067조 원 전망
- 인구·사회 구조 변화
 - 1인 가구 증가와 노년층 증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 감소
 - 언택트 & 비대면 소비, 정기구독 서비스 등 판매 채널 다변화로 신규 투자 발생
 - 유통산업 자동화로 인한 투자비 증가와 제품가격 상승
- 대기업 중심 유통산업 구조 황폐화
 - 온라인 판매 증가로 물류 자동화 도입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 증가
 - 오프라인 시장 축소로 인한 신규고용 감소
 - 대기업 제품 독과점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
 - 지역 대규모 유통시설 발생이익 본사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경제 선순환 저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계 결과 같은 기간 전국 전통시장 수도 1502개에서 1388개로 114개(7.6%) 감소
- 경제적 저성장 추이로 인한 소비 및 유통산업에 영향과 소매 유통업 수익성 악화
 - 2024년 소매유통기업 250개 사 대상 소비시장 전망조사 결과, 2025년 소비시장은 1.6%의 성장 수준 예측(대한상공회의소, 2023)
 - 2021년(7.5%), 2022년(3.7%), 2023년(2.9%)보다도 낮은 수치임

4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시설 매출 감소

- 온라인·비대면, 라이브커머스, 오픈마켓 등 판매 플랫폼 다변화 및 매출 증가

- 통계청(2024),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 8,02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증가,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4조 8,026억 원으로 11.9% 증가
-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13년 38조 4,978억 원에서 2022년 209조 8,790억 원으로 무려 5.5배로 급증

○ 대규모 유통시설의 역할 변화: 자동화, 지역 물류 거점화

- 팝업스토어, 거점물류센터, 픽업(Pick-Up) 매장 등

○ 해외직구,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

- 통계청(2024),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및 구매액 추이」에 따르면, 2024년 1/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6,476억 원으로 9.4% 증가

□ 대규모 유통시설 확대에 따른 지역 상권 변화

○ 지역 유통시설 및 지역상점가 간 경쟁 심화

- 오프라인 이외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따라 유통시설 간 경쟁 과다

- 대기업 출자 대규모 유통시설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기존 상권 간 경쟁 심화

○ 전통시장과 지역의 중소 상권들의 입지 축소

- 서점, 병원, 안경점, 미용실, 세탁소 등 기타 서비스업 흡수

○ 지역 상권 변화와 역외 유출 심화

- 대규모 유통시설이 위치한 지역 상권이 중심상권으로 이동되거나 기존 상권 침해

○ 지역 생산자의 판로가 봉쇄되는 등 지역 경제 발전 저해

○ 유통시설 과밀로 인한 문제 심화

- 대기업 유통시설 잠식으로 유통산업 지역경쟁력 약화, 지역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 지역 대규모 유통시설 발생 수익의 역외(수도권) 유출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 고용효과 감소

- 대형마트 고용 수준: 약 160명 내외 (이마트 수원점: 160명, 이마트 서수원점: 168명)

- 전통시장 고용 수준: 팔달문시장 548명, 화서시장 437명

- 최근 다크스토어(Dark Store)*로 지역 파급효과 및 고용불안 가속화
- *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신속하게 배송하기 위해 운영되는 도심 내 물류 센터로 대규모 유통시설이 물류 허브 역할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다수 조성

- 경기도 중심 도시로 대규모 유통시설 다수 입점하였고 이후 타 지자체 유통시설 확충에 따라 기존 시설 간 경쟁 심화
 - 2010년 대 초까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중심지로 주요 행정시설, 대기업 입지 등의 요인에 따라 도시가 팽창한 이후 대형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로 인한 다수의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 유통시설의 수요에 따라 경기 남부권(화성, 용인, 성남) 유동인구를 흡수하였으나, 타 지자체 내 유통시설이 신규·확장 조성되면서 이용객 급감과 신규 유입효과도 미비한 상황
 - 2013년 39조 1,000억 원이던 대형마트 매출은 2022년 34조 7,739억 원까지 11.1% 감소

표 1-1 | 수원시 대규모 점포개소

구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개소	2개소	1개소	13개소	7개소
점포명	갤러리아 롯데백화점	스타필드	홈플러스(5) 이마트(4) 롯데마트(4) 외	NC수원 롯데몰 뉴코아 북수원 아울렛 외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의 지속적인 유입세

- 최근 수원시 내 주요 쇼핑센터와 대규모 유통시설의 신규입점 및 재단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월 수원 스타필드가 입점하였고, 기존 롯데몰의 리뉴얼과 개점휴업 상태였던 텡스몰이 신규영업을 준비 중
 - 신세계 수원 스타필드, 롯데몰 신규 점포 조성, 텡스몰 신규개점 등
 - 롯데몰, 2023년 10월 재단장 착수, 2024년 상반기 리뉴얼
 - 신세계프라퍼티, 2024년 1월 26일, 수원시 장안구에 스타필드 수원 개장

6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 타 지자체 대비 수원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다수

- 수원시 전통시장 수는 총 22개이며, 소상공인은 약 10만 명으로 집계됨
-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수가 타 지자체 대비 다수
 - 전통시장 조성 현황: 고양(4), 용인(4), 화성(5), 시흥(5), 안양(8) 등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지역 불균형 발생

- 대규모 유통시설 수요지(영통구)를 중심으로 불균형 조성
- 전통시장 밀집 지역(팔달구, 장안구) 내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 불가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을 위한 장기적 정책 방안 미비

○ 이전 대규모 유통시설의 규제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는 달리 최근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시장 확대 등으로 소비자 편익 강조 등의 이유를 들어 규제의 축소 움직임 확대

○ 경기침체, 온라인 시장 확대 등 대규모 유통시설 수의 자연적 감소 또는 성장세 주춤

- 수원시 신규 유통시설 입점/확대 지속
- 신규 택지 조성에 따른 대규모 유통시설 신규 조성 수요
 - 당수1지구, 당수2지구, 호매실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후 신규 대규모 유통시설 수요
 - 3기 신도시 확대, 바이오이노베이션벨리 조성, 신분당선 연장 등

○ 수원시 유통 생태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

- 수원시 소매 유통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에 대한 선제적 정책 전략 마련
- 기존 유통산업관리법 적용에 따른 한계점 보완하고, 수원시 유통산업의 불필요한 경쟁과 비효율성을 막아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 필요
- 수원시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정책전략 도출

제2절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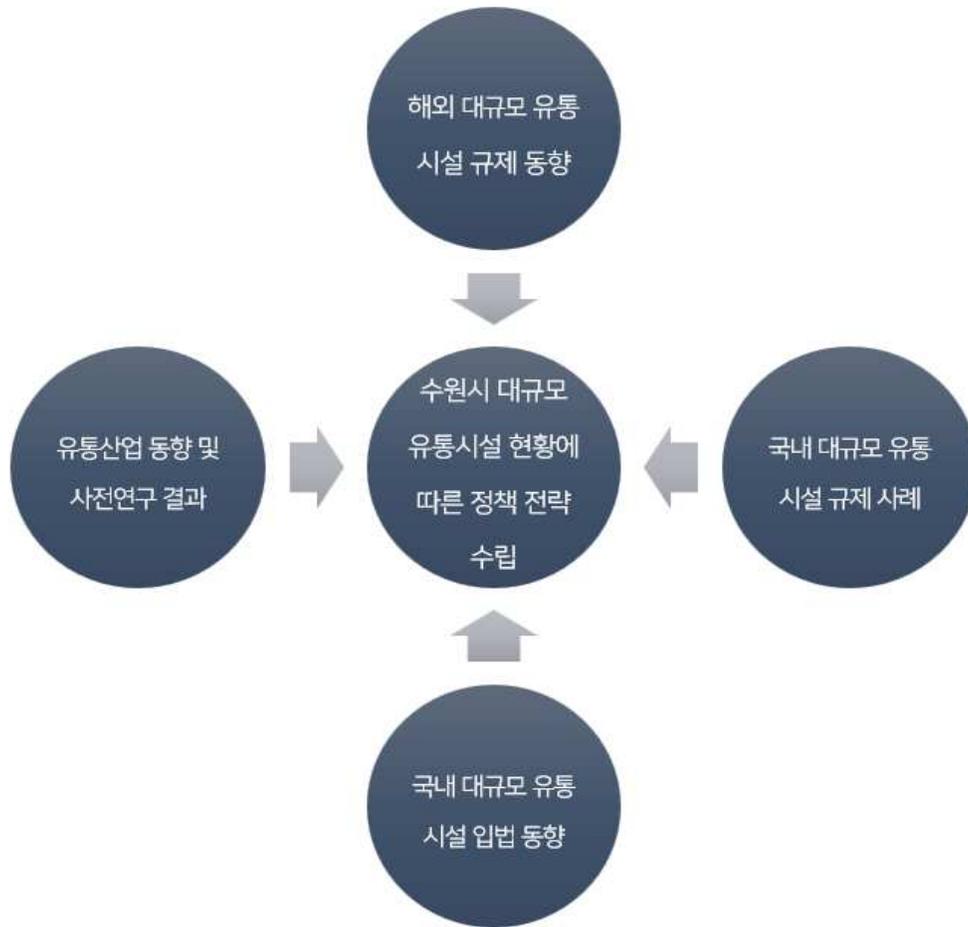
□ 수원시 적정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도출

- 수도권, 광역시 및 특례시 대규모 유통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적정수준 예측
 - 수도권, 광역시, 특례시 내 조성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과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간 점포 수 비교
 - 단순 점포 수 비교가 아닌, 지역 인구 및 GRDP(지역내총생산)를 고려하여 비교군을 도출하고 향후 유통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적정 유통시설 수준 산출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수원시 내 대규모 유통시설 상권조성 현황 분석

□ 수원시 적정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수원시 적정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정책 마련을 위한 국내·외 대규모 유통시설 산업동향, 입점과 영업규제 등 정책전략, 정책효과 등 사전 연구 실시
- 해외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방안 및 규제 동향 분석
- 국내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사례 현황 분석
 - 타 지자체에서 추진한 대규모 유통시설 대상 입점 및 영업규제 사례와 이후 후속 결과에 대한 탐색
 - 유통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정책 전문가 등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현황에 따른 정책 방향 의견수렴
- 국내 대규모 유통시설 입법 정책 동향 분석
 -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의안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산업발전법 내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관련 입법 동향, 문제점, 한계점 파악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에 따라 대응방안 모색하기 위해 유통산업 동향 전반과 유통산업발전법 내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규제, 정책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전략에 대한 제시

그림 3-1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정책 수립방안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적정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관련 선행연구

제2절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유통산업 및 정책동향 선행연구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적정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관련 선행연구**

□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 수준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 삼성경제연구원(2001) 연구에서는 인구 밀집도와 면적을 고려하였을 때(군 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 인구 제외할 때), 인구 15만 명당 1개(국내 적정 대형마트 점포 수 약 275개)를 적정 점포 수로 도출
- 신세계 유통 산업연구소(2003)에서는 GNI(국민총소득)를 기준으로 소비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인구 10만 명당 1개를 적정 점포 수로 도출
- 서용구, 한경동(2004)에서는 대형 할인점의 적정 점포 수 또는 포화수준 논의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66개 행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할인점의 성장 추세를 살펴본 후, 소매포화지수를 이용한 대형 할인점 포화지수를 산출하고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인천의 동구, 서울의 금천구, 인천의 계양구, 중구, 연수구, 서울의 도봉구, 강서구, 경기의 고양시, 인천의 남동구, 서울의 중랑구 등의 순으로 대형 할인점의 포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
- 서용구 외(2008)에서는 지방세, 도로밀도, 백화점 점포 수를 활용하여 포아송 분포를 통해 산출한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적정 개소는 인구 10만 명당 1개소로 도출
- 대한상공회의소(2003)의 연구에서는 인구 8만 명당 1개소를 적정 점포로 제시
- 사전 연구에서는 인구, GNI(국민총소득), 면적 등의 지역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점포를 산출 하였으나, 2020년 이후 대규모 유통시설 감소 및 인구감소 감소 추이에 따른 인한 추가 연구 미진한 실정

제2절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유통산업 및 정책동향 선행연구

□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유통산업 선행연구

- 최근 유통시장의 경쟁구조가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무의미하다는 판단
 -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온라인 시장 확대로 제한적
 - 이커머스 시장 확장으로 2023년 쿠팡은 최초 흑자 전환(영업이익 6,147억 원, 매출 31조)
 - 2023년 이마트 469억 원 영업 손실(대신증권, 2024)
 - 이외 1인 가구 및 신혼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주말 이용 소비자 편의성 감소 대비 지역 상권 간 상생 효과 의문 지속
-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는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완화로 오프라인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 소비자 편익 확대 필요성 제시
 - 글로벌 경제위기 속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제 전반이 흔들리면서 소비시장 위축
- 한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24),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 완화(76.4%)*에 대한 의견이 규제유지(23.6%)보다 약 3배 많은 상황
 - * 의무휴업 폐지(32.2%), 평일 의무휴업 시행(33.0%), 의무휴업일 온라인거래 허용(11.2%)
 -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찬성(74.8%), 반대(25.2%)
 - (의무휴업일 온라인거래 허용) 찬성(78.9%), 반대(21.1%)
- 21대 및 22대 국회,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 제출
 - 영업 제한시간(0시~10시)과 의무휴업일(공휴일 원칙, 매월 2일)에는 금지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제출
- 국내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점포 수는 2019년 407개에서 2024년 4월 기준 372개로 감소 5년간 35개 감소(최빛나, 2024) 중
 - 시설관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실적 부진 점포 관리 지속
 -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직원 수는 6만3302명에서 5만3155명으로 1만 147명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16년 8,456억 원에서 이듬해 6,507억 원으로 23% 줄어든 데 이어 2018년 3,529억 원으로 절반 수준 급감(아시아경제, 2024)

- 최근 수행된 실증연구에서 대규모 유통시설 폐점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는 오히려 주변 상권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결과 확인(허성윤 & 진현정, 2024)
 - 대모 유통시설로 인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에 주목하였으나, 최근 실증분석(카드사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결과에서는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조성 및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상반된 연구 결과 도출
-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실효성 연구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인근 전통시장과 식당, 슈퍼마켓과 편의점 상권 소비위축 유발(서용구, 2017)
 -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전 소비 규모를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가 -6.4%, 전통시장이 -3.3%로 동반 감소
- 2023년 2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가 이후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32.3%)과 음식점(25.1%), 대형마트 및 SSM(6.6%)의 매출이 모두 증가(조춘한, 2023)
 -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주요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19.8%)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는 인근 지자체인 부산(16.5%), 경북(10.3%), 경남(8.3%)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오프라인 지출 중 백화점·쇼핑몰 등 여가 위주의 소비처는 주말 상승 후 평일에는 하락하는 반면 편의점, 할인점·슈퍼마켓 등 소상공인의 주요 구성 업종은 목·금요일 지출 증가(서울연구원, 2021)

표 2-1 |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영향 관련 연구

구분	연구내용	비고
규제 긍정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송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중 점포의 42.0%에서 일평균 매출액과 고객수가 증가 • 강동·송파 외 의무휴업일 중 전통시장 점포의 약 40%에서 유사한 영업실적 증가 •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세를 감안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매출 상승 기여 	김범식(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4개 구역의 상인(1,0000명)과 소비자(600명)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에서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 등 실질적 소비 이전 발생 • 의무휴업일로 소비자의 47.5%가 동네슈퍼(49.2%)와 전통시장(19.2%)으로 구매 전환 • 의무휴업일에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에서의 구매금액이 평소 구매액보다 35% 이상 높게 나타나 의무휴업제도 유효성 제시 	신승만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분석을 통해 대형마트의 출점으로 인해 주변 상권의 소규모 슈퍼마켓 사업체 수, 식료품 소매업 사업체 수, 전체 소매업체 수 감소를 확인함 	권태구, 성낙일(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할인마트 1개가 추가로 진입할 때 평균적으로 소규모 슈퍼마켓 (5.3%), 식료품 소매업체(4.5%) 및 전체 소매업체(3%)가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 이후 전통시장 내 마트형 점포의 매출액은 의무 휴업일 당일 약 18% 증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내 점포 매출액 증가 확인 	정수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전통시장의 지출액 감소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대형 유통점의 진출이며 다음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나쁜 시장 입지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대형마트가 출점되면 일평균 매출은 15%, 고객은 약 10% 감소 소상공인 대상 설문결과, 대형 유통점의 진출, 인터넷과 홈쇼핑을 비롯한 구매행태의 변화,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 순으로 집계됨 	허남길(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거주지와 대형마트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형마트의 구매빈도는 올라가는 반면, 소형슈퍼의 구매빈도는 감소하여 주거지와의 거리에 따라 두 상점 유형 간 대체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조승현, 김지현, 이은지, 박경선(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15개 시·군 소상공인 1097명 대상 소상공인 업제 이윤을 파악한 결과, 대형마트는 소상공인 간 거리가 멀수록 소상공인 이윤증가 확인 	이민정, 김양중(2019)
규제 부정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에 따른 유통업자의 매출액·소비자의 거래비용 증가·협력업체 매출액·세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손실이 규제로 인한 이득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더 크게 증가시킬 것이고, 보호받는 소매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 가중 	정진욱, 최윤정(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 휴일규제는 다른 여가 활동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비,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매출 성장 하락 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은 상호 보완관계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집객효과 제시 휴일규제 효과로 오히려 슈퍼마켓의 소비가 위축되었으며, 매출성장도 둔화 일요일과 수요일 규제 중 수요일 규제 시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증가 	서용구, 조춘한(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M과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집객효과로 인해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일부 업종에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환, 임영균, 최필호(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 폐점으로 슈퍼마켓을 제외한 소매업, 음식점 등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액 감소 폐점으로 인해 주변 상권 반경 2km까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반경 2km 이상도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 	김현아, 서진형, 조춘한(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의 폐점은 반경 2km 주변상권에 부정적인 영향 통신사 유동인구 자료 분석 결과, 대형마트 폐점은 소비자들 중 일부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만들어 유동인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주변 골목상권 매출 건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상권의 동반 침체 야기 	허성윤, 진현정(2024)

□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정책 동향 선행연구

- 정부에서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제 삭제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을 발표함에 따라 지자체 단계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
 - 영업 제한시간 변경 행정고시 시행(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간)
 - 유통산업발전법 법 개정 전으로 1시간 영업 제한시간
 - 시장·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 불가 시간은 오전 0~10시 범위
-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 2회 의무 휴업일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휴업일 지정
 -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 규제 장벽이 축소되면서, 외국계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대기업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간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 2023년에는 대구광역시, 충북 청주가 2024년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 동대문구 등에서 의무 휴업일에 대한 전환을 추진하면서 점차 지자체 조례에 대한 축소 움직임
- 타지방자치단체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최소화 기조
 - 소비자 편익과 지역 유통산업 경쟁력 확보
 - 유통시설 감소 추이에 따른 신규 입점, 영업시간 규제 등 규제정책 축소
 - 대형마트 영업 제한 후에 따라 소비자는 슈퍼마켓이나 전문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날짜 또는 시간대에 대형마트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은주 & 권영선, 2014)
 - 대규모 유통시설 폐점으로 주변 상권 동반 소멸
- 대전광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 “유통시설총량제”에 따라 대규모 유통시설의 신규 입점을 제한한 대전광역시는 이후 대규모 유통시설 축소와 유통산업 동향에 따라 지역 유통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인 상인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 추진 절차 실시 중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발의안

-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를 위한 입법 발의(안)에서는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강화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 국회에서도 현행법상의 상권 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 강조
- 상권 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상권 및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한 절차 이행방안 강화
 -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협력계획서 강화
- 최근 대규모 유통시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영업시간 규제 축소를 통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발의된 상황

표 2-2 |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제한 법안 발의

제안자	제안일	주요내용
최수진 의원 등 10인	2024-06-27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완화
고용진 의원 등 10인	2021-06-28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 해지
이종배 의원 등 10인	2020-07-20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 해지
홍익표 의원 등 14인	2020-07-02	대규모점포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 제한가능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대상 포함
김정호 의원 등 11인	2020-07-01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홍익표 의원 등 10인	2017-02-15	매장면적 1만㎡ 이상의 초대규모점포의 상업지역에서의 개설을 원칙적 금지
박찬대 의원 등 10인	2017-02-08	대규모점포의 등록시기를 '영업시작 전'에서 '건축허가 시'로 변경
유동수 의원 등 18인	2016-09-23	
노회찬 의원 등 11인	2017-01-12	매장면적 1만㎡ 이상의 초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서영교 의원 등 10인	2016-12-20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김종훈 의원 등 10인	2016-11-23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백화점, 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실시
이연주 의원 등 10인	2016-10-18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월 4일로 확대
김경수 의원 등 13인	2016-09-23	광역시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상권 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대규모점포의 상권 영향평가를 실시
정유섭 의원 등 10인	2016-09-02	대규모점포 인접지역의 지자체장은 영업시작 전, 상권 영향 평가에서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요구 가능
박지원 의원 등 14인	2016-07-11	
김진표 의원 등 11인	2016-08-31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유동수 의원 등 14인	2016-08-09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
조경태 의원 등 12인	2016-05-31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변경

제3장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제1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제2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수준 도출 방안

제2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수준 도출

제3장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제1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현황

- 2024년 8월 기준,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은 대형마트 13곳, 백화점 2곳, 복합쇼핑몰 1곳, 쇼핑센터, 6곳, 그 밖의 대규모 점포 4곳, 전문점 2곳 위치

표 3-1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현황

연번	업 태	상호명	소재지
1	대형마트	롯데마트 광고점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이의동)
2		롯데마트 권선점	권선구 동수원로 232(권선동)
3		롯데마트 영통점	영통구 봉영로 1579(영통동)
4		롯데마트 천천점	장안구 만석로19번길25-10(천천동)
5		이마트 광고점	영통구 광고로191(이의동)
6		이마트 서수원점	권선구 수인로 291(구운동)
7		이마트 수원점	권선구 경수대로 270(권선동)
8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	영통구 삼성로2(신동)
9		홈플러스 동수원점	팔달구 효원로 257(인계동)
10		홈플러스 북수원점	장안구 경수대로 930(조원동)
11		홈플러스 서수원점	권선구 금곡로 236(금곡동)
12		홈플러스 영통점	영통구 봉영로 1576(영통동)
13		홈플러스 원천점	영통구 중부대로 437(원천동)
14	백화점	AK플라자 수원점	팔달구 덕영대로 924(매산로1가)
15		갤러리아 광고	영통구 광고중앙로 124(하동)
16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	장안구 수성로 175
17	쇼핑센터	NC수원 터미널점	권선구 경수대로 270(권선동)
18		뉴코아 동수원아울렛	팔달구 인계로 154(인계동)
19		롯데몰 수원	권선구 세화로 134(서둔동)
20		롯데쇼핑아울렛 광고점	영통구 도청로 10(이의동)
21		북수원 패션아울렛	장안구 경수대로 950(조원동)
22		아브뉴프랑 광고점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이의동)
23	그 밖의 대규모점포	광고 엘포트몰	영통구 광고중앙로 145(이의동)
24		엘리웨이 광고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80(원천동)
25		중흥S클래스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277(원천동)
26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오피스텔&상가	장안구 대평로 27(정자동)
27	전문점	수원종합공구단지	권선구 권선로 308-18(고색동)
28		홈씨씨 수원점	권선구 세화로 134번길 31(서둔동)
29	기타	팅스몰(영업 미개시)	팔달구 갓매산로 85(매산로1가)

표 3-2 | 수원시 유통시설 현황

유통시설	개소 수	구분
전통시장	22개소	붉은색
대형마트	13개소	연두색
백화점	2개소	하늘색
복합쇼핑몰	1개소	보라색
쇼핑센터	7개소	분홍색

표 3-3 | 수원시 지역구 별 유통시설 현황

행정구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합계
팔달구	14	1	1	0	2	18
영통구	1	6	1	0	2	10
장안구	5	2	0	1	1	9
권선구	2	4	0	0	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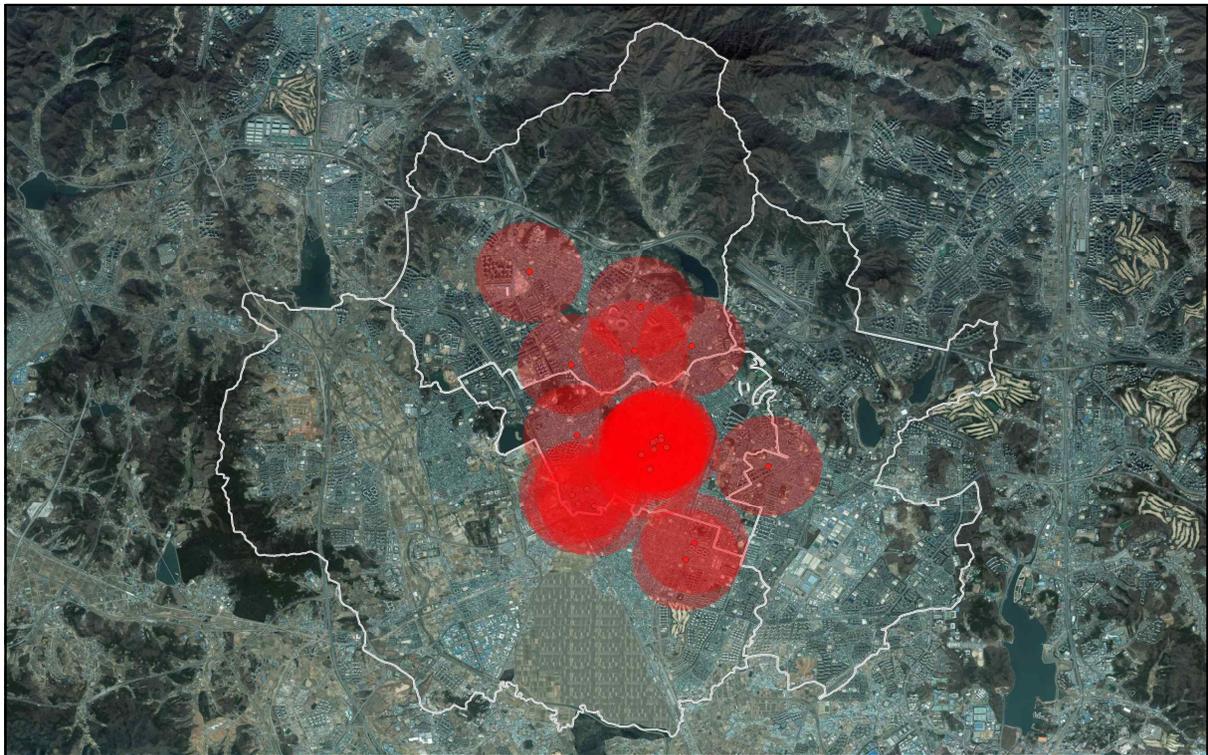
그림 3-1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현황



□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 유보 지역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위치한 경우 등록 제한이 가능
 -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장안구와 팔달구를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내 신규입점은 입점 규제에 의한 제한

그림 3-2 | 수원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현황



□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에 따른 상권 영향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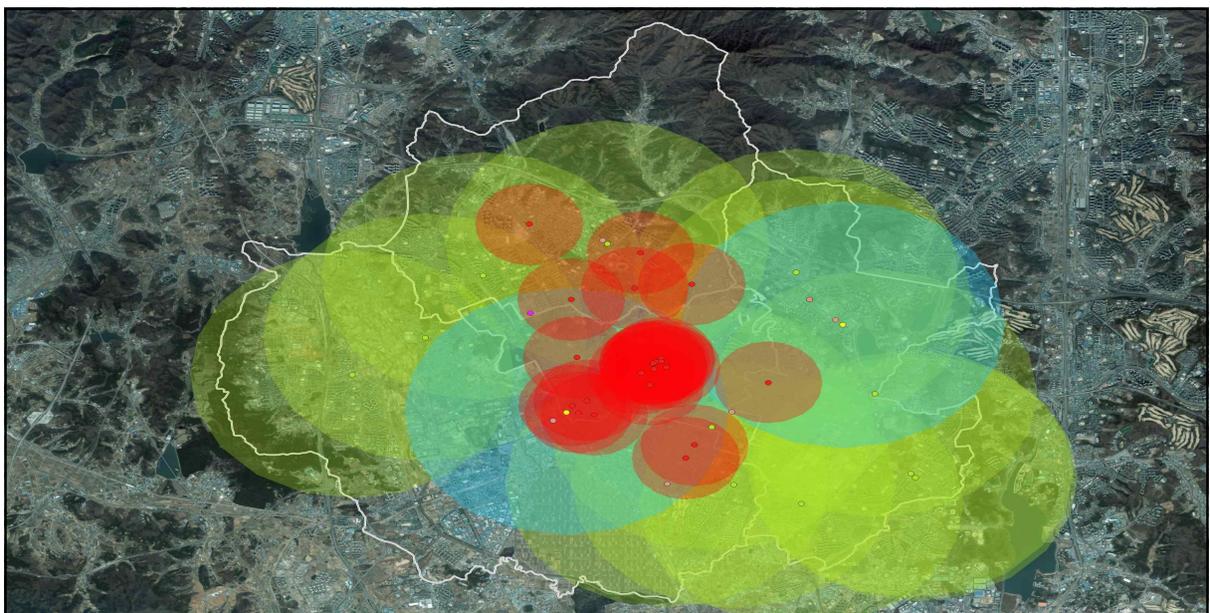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지역에 따라 반경 3km를 기준으로 상권 영향 수준 탐색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해당 상권 내 개설지역의 반경 3km로 출점지 기준 범위

- 중소기업연구원(2017)의 연구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이 2~3km 내 상권을 빨아 당기는 상권 잠식 효과 범위 제시
- 김현철, 이승일(2019)의 연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반경 3km를 상권 영향권역으로 설정
- 이상규(2004)는 대형할인점의 입지결정 요인으로 인구, 경제, 교통, 토지이용, 성장잠재력 등을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권 반경을 2~5km로 제시
- 수원시 권선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대규모 유통시설 상권 영향 범위 내 위치

그림 3-3 | 수원시 백화점·대형마트 조성지역 및 상권 영향



그림 3-4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지역 상권 영향



□ 수원시 전통시장 현황

- 수원시 내 전통시장은 총 22개로 면적은 약 33.1km² 이며, 종사자는 총 6,628여 명
 - 2022년 기준 경기도 전통시장 수는 221개소로 약 10%가 수원시 내 위치
 - 화성시(5개소), 용인시(4개소), 성남시(27개소), 고양시(4개소)로 경기도 두 번째로 수도권 내 전통시장 다수
- 수도권 전통시장 매출액 비교 (2022년 기준)
 - 수도권 전통시장 1개소 평균 매출액: 약 355억 원으로 추산
 - 수원시 전통시장 1개소 평균 매출액: 약 181.7억 원으로 추산(수도권 평균의 약 51%)

표 3-4 | 수원시 전통시장 현황

(단위: m², 명)

연번	상호명	소재지	면적	종사자
1	북수원시장	장안구 파장로82번길 9(파장동)	3,500	257
2	화서시장	팔달구 동말로68번길 15(화서동)	14,759	620
3	권선종합시장	권선구 세권로 185(권선동)	27,236	140
4	수원역전시장	팔달구 매산로 2-10(매산로1가)	20,093	342
5	지동시장	팔달구 팔달문로 19(지동)	4,836	257
6	영동시장	팔달구 수원천로255번길 6(영동)	17,661	520
7	시민상가시장	팔달구 팔달문로4번길 19(영동)	936	62
8	팔달문시장	팔달구 정조로770번길 17(영동)	27,236	570
9	남문패션1번가시장	팔달구 정조로758번길 24(영동)	16,405	252
10	남문로데오시장	팔달구 행궁로 88(교동)	12,893	360
11	못골종합시장	팔달구 수원천로258번길 10-12(지동)	4,934	149
12	조원시장	장안구 조원로89번길 8(조원동)	13,500	250
13	구천동공구시장	팔달구 수원천로199번길 5(구천동)	6,932	132
14	역전지하도상가 시장	팔달구 덕영대로 지하907-65(매산로1가)	1,954	180
15	정자시장	장안구 수성로261번길 16(정자동)	13,127	330
16	구매탄시장	영통구 매여울로53번길 50-1(매탄동)	5,590	150
17	미나리광시장	팔달구 수원천로266-4(지동)	6,979	116
18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팔달구 향교로 29(매산로2가)	55,723	1,120
19	장안문 거북시장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영화동)	35,037	259
20	수원가구거리 상점가	권선구 권선로 690(권선동)	20,393	200
21	매산시장	팔달구 권선로 477(매산로2가)	7,873	172
22	반딧불이연무시장	장안구 월드컵로428번길 10(연무동)	13,710	190
합계			331,307	6,628

제2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수준 도출 방안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 수준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

- 경기도, 특례시, 광역시 내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전수조사 개요
 - 경기도 내 지자체, 특례시, 광역시 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쇼핑센터
 - 행정안전부 제공 대규모점포(2024) 데이터 기준으로 2024년 기준 점포 현황에 대한 2차 온라인 검증 및 지자체 유선 검증
- 경기도, 특례시, 광역시 내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기준
 -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전문점 제외
 - 기타 대규모 유통시설
 - 수원시의 경우 광고 엘포트, 엘라웨이 광고, 중흥 S클래스, 화서역 오피스텔&상가 제외
- 복합쇼핑몰 및 쇼핑센터 통합조사 실시
 - 법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기타로 구분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는 자발적 등록에 따른 차이 (법제연구원, 2017; 이국현, 2016)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수준 탐색 방안

- 수원시 현행 인구추세, 변화된 유통 산업 구조,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점포 수 도출
 - GRDP(지역내총생산), 인구, 면적 등 지역 유통시설의 경쟁력과 대규모 유통시설 이용 고객 소비수준 및 편의성 고려 필요
 - GRDP는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것으로, 그 지역의 경제력을 의미함
 - GRDP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1년 GRDP 시/군/구 기준자료
 - 경기도 내 수원시와 GRDP, 인구 유사 지자체 간 비교
 - 특례시(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간 비교
 -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간 비교
 - 1인당 GRDP 지수를 활용하여 수원시의 가장 적합한 비교 집단을 선정하고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산출

표 3-5 | 소매업 업태 구분

소매업태	정의
백화점	단일 경영체제 하에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며 주된 취급품목 없이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의류, 가구, 귀금속,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점포로 각 매장별로 전용 판매원이 배치되어 매매 및 계산이 이루어지는 소매점
대형마트	대형마트를 대형매장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이 아닌 종합소매점
슈퍼마켓	매장면적이 3,000㎡ 미만이고 단일경영체제하에서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점, 경영 형태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형 슈퍼마켓과 대규모 유통 업체가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 SSM)으로 분류
편의점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24시간 판매(소매)하는 소매점
전문소매점	일정한 매장을 갖추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재래시장의 상점들을 포함하여 흔히 일컫는 골목상권의 영세 상점들이 전문소매점 분류에 속함
무점포소매	인터넷쇼핑(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가상소매점), 홈쇼핑(TV 홈쇼핑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 방문 및 배달 판매점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3절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수준 도출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수준 탐색을 위한 비교군 선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대규모 유통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유통시설 입점이 부족하여 주민 편의 및 유통시장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비교군 선정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례시, 광역시 간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현황 비교
 -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GRDP(지역총생산)가 15조 이상이면서, 인구 상위 5개 시도 간 비교
 -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GRDP(지역총생산)가 15조 이상이면서, 인구 상위 10개 시도 간 비교
 - 3개 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간 비교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간 비교
 - 특례시와 광역시 간 비교

□ 경기도 5개 지자체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비교 결과

-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GRDP(지역총생산)가 15조 이상이면서, 인구 상위 5개 시의 대규모 유통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센터 + 쇼핑센터) 비교를 통해 적정 점포 수 도출
- 경기도 지자체의 GRDP 및 인구현황 조사 결과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5개 기초지자체 간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비교
- 경기도 5개 지자체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은 약 3개소가 더 조성된 상황
 - 대형마트 약 3개소, 백화점은 복합쇼핑몰 및 쇼핑센터는 약 1개소가 더 많은 것으로 산출

표 3-6 | 경기도 5개 지자체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단위: 십억 원, 명, 개)

구분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수원
GRDP(지역총생산)	22,617	35,309	50,303	91,042	17,941	35,685
인구	1,071,339	1,078,150	919,464	949,912	776,349	1,234,574
대규모 유통시설 합계	19	18	11	12	13	22
대형마트	10	12	5	9	4	13
백화점	3	1	4	1	2	2
복합쇼핑몰	3	0	0	2	0	1
쇼핑센터	3	5	2	0	7	6

표 3-7 | 경기도 5개 지자체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단위: 명, 개)

구분	대규모점포 전체(A+B+C)	대형마트(A)	백화점(B)	복합쇼핑몰+ 쇼핑센터(C)
경기도 5개 1인당 점포 수	65,688	119,880	435,929	217,964
수원시 1인당 점포 수	56,117	94,967	617,287	176,368
비교 비율	117%	126%	71%	124%
수원시 현행 총 대규모 유통시설	22.0	13.0	2.0	7.0
경기도 5개 평균 대규모 유통시설	18.8	10.3	2.8	5.7
유통시설 차이	3.2	2.7	△0.8	1.3
수준	과밀	과밀	여유	과밀

□ 경기도 10개 지자체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비교 결과

-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GRDP(지역총생산)가 15조 이상이면서, 인구 상위 10개 시의 대규모 유통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센터 + 쇼핑센터) 비교를 통해 적정 점포 수 도출
- 경기도 지자체의 GRDP 및 인구현황 조사 결과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평택, 이천, 안산, 파주, 안양 10개 기초지자체 간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비교
- 경기도 10개 지자체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은 약 4개소가 더 조성된 상황
 - 대형마트 약 3개소, 백화점은 복합쇼핑몰 및 쇼핑센터는 약 1개소가 더 많은 것으로 산출

표 3-8 | 경기도 10개 지자체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단위: 십억 원, 명, 개)

구분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GRDP(지역총생산)	22,617	35,309	50,303	91,042	17,941
인구	1,071,339	1,078,150	919,464	949,912	776,349
대규모 유통시설 합계	19	18	11	12	13
대형마트	10	12	5	9	4
백화점	3	1	4	1	2
복합쇼핑몰	3	0	0	2	0
쇼핑센터	3	5	2	0	7
구분	평택	이천	안산	파주	안양
GRDP(지역총생산)	35,039	28,534	25,717	23,932	18,440
인구	592,800	221,366	626,954	503,547	546,384
대규모 유통시설 합계	8	4	8	6	8
대형마트	4	2	4	3	4
백화점	1	0	1	0	2
복합쇼핑몰	0	1	0	1	0
쇼핑센터	3	1	3	2	2

표 3-9 | 경기도 10개 지자체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단위: 명, 개)

구분	대규모점포 전체(A+B+C)	대형마트(A)	백화점(B)	복합쇼핑몰+ 쇼핑센터(C)
경기도 10개 시 1인당 점포 수	68,096	127,829	485,751	208,179
수원시 1인당 점포 수	56,117	94,967	617,287	176,368
비교 비율	121%	135%	79%	118%
수원시 현행 총 대규모 유통시설	22.0	13.0	2.0	7.0
경기도 10개 평균 대규모 유통시설	18.1	9.7	2.5	5.9
유통시설 차이	3.9	3.3	△0.5	1.1
수준	과밀	과밀	여유	과밀

□ 특례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비교 결과

- 수원특례시 이외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간 대규모 유통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 쇼핑센터) 점포 수준 비교
- 각 특례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적정 점포 수를 산출한 결과,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은 약 2개소가 더 조성된 상황
 - 대형마트는 약 2개소, 백화점 약 1개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쇼핑몰 및 쇼핑센터는 약 1.5개소가 더 많은 것으로 산출
- 특례시 간 비교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및 쇼핑센터, 전통시장 등 유통시설 조성 편차가 크고, 비교집단 수 부족이라는 한계 존재

표 3-10 | 특례시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단위: 십억 원, 명, 개)

구분	고양	용인	창원	수원
GRDP(지역총생산)	22,617	35,309	38,694	35,685
인구	1,071,339	1,078,150	1,004,693	1,234,574
대규모 유통시설 합계	19	18	14	22
대형마트	10	12	7	13
백화점	3	1	4	2
복합쇼핑몰	3	0	2	1
쇼핑센터	3	5	1	6

표 3-11 | 특례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단위: 명, 개)

구분	대규모점포 전체(A+B+C)	대형마트(A)	백화점(B)	복합쇼핑몰+ 쇼핑센터(C)
특례시 1인당 점포 수	61,847	108,765	394,273	225,299
수원시 1인당 점포 수	53,677	94,967	617,287	154,322
비교 비율	115%	115%	64%	146%
수원시 현행 총 대규모 유통시설	22.0	13.0	2.0	7.0
특례시 평균 대규모 유통시설	20.0	11.4	3.1	5.5
유통시설 차이	2.0	1.6	△1.1	1.5
수준	과밀	과밀	여유	과밀

□ 광역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비교 결과

- 수원시 인구수준 및 GRDP(지역총생산)을 고려하여 광역시 간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비교
 - 수원시는 인구 120만 이상의 특례시로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 울산, 대전과 유사한 인구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 선정
- 광역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은 약 2.5개소가 더 조성된 상황
 - 대형마트 약 2개소, 복합쇼핑몰 및 쇼핑센터는 약 1개소가 더 많은 것으로 산출

표 3-12 | 광역시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단위: 십억 원, 명, 개)

구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GRDP(지역총생산)	97,806	98,671	61,000	43,743	77,974	46,717
인구	3,289,401	3,003,150	2,372,008	1,417,031	1,102,161	1,441,536
대규모 유통시설 합계	60	40	39	19	20	21
대형마트	33	25	23	10	10	11
백화점	7	4	1	5	3	5
복합쇼핑몰	4	1	7	0	3	1
쇼핑센터	16	10	8	4	4	4

표 3-13 | 광역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단위: 명, 개)

구분	대규모점포 전체(A+B+C)	대형마트(A)	백화점(B)	복합쇼핑몰+ 쇼핑센터(C)
광역시 1인당 점포 수	63,444	112,726	505,011	203,634
수원시 1인당 점포 수	53,677	94,967	617,287	176,368
비교 비율	113%	119%	82%	115%
수원시 현행 총 대규모 유통시설	22.0	13.0	2.0	7.0
광역시 평균 대규모 유통시설	19.5	11.0	2.4	6.1
유통시설 차이	2.5	2.0	△0.4	0.9
수준	과밀	과밀	적정	과밀

□ 광역·특례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비교 결과

- 지역 총 인구를 고려하여 수원시와 광역시, 특례시 간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비교
 - 특례시와 광역시 간 비교는 타 기초지자체보다 더 많은 유통시설 조성이 이뤄진 상황으로 소비자 편익에서 경쟁력 있는 유통시설 수준 도출 가능
- 특례시와 광역시 유통시설 수준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은 약 2개소가 더 조성된 상황
 - 대형마트 약 2개소, 복합쇼핑몰 및 쇼핑센터는 약 1개소가 더 많은 것으로 산출

표 3-14 | 특례시, 광역시 GRDP 및 인구,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단위: 십억 원, 명, 개)

구분	고양	용인	창원	수원
GRDP(지역총생산)	22,617	35,309	38,694	35,685
인구	1,071,339	1,078,150	1,004,693	1,234,574
대규모 유통시설 합계	19	18	14	22
대형마트	10	12	7	13
백화점	3	1	4	2
복합쇼핑몰	3	0	2	1
쇼핑센터	3	5	1	6

구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GRDP(지역총생산)	97,806	98,671	61,000	43,743	77,974	46,717
인구	3,289,401	3,003,150	2,372,008	1,417,031	1,102,161	1,441,536
대규모 유통시설 합계	60	40	39	19	20	21
대형마트	33	25	23	10	10	11
백화점	7	4	1	5	3	5
복합쇼핑몰	4	1	7	0	3	1
쇼핑센터	16	10	8	4	4	4

표 3-15 | 특례시, 광역시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단위: 명, 개)

구분	대규모점포 전체(A+B+C)	대형마트(A)	백화점(B)	복합쇼핑몰+ 쇼핑센터(C)
특례시+광역시 1인당 점포 수	63,118	111,911	478,166	207,625
수원시 1인당 점포 수	53,677	94,967	617,287	154,322
비교 비율	118%	118%	77%	135%
수원시 총 대규모 유통시설	22.0	13.0	2.0	7.0
특례시+광역시 평균 대규모 유통시설	19.6	11.0	2.6	5.9
유통시설 차이	2.4	2.0	△0.6	1.1
수준	과밀	과밀	여유	과밀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현황 비교결과 및 적정수준 도출 결과

- 경기권 기초지자체(인구 상위 5개 시, 인구 상위 10개 시), 특례시, 광역시 간 비교결과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은 포화수준으로 나타남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은 타 시도 대비 최소 2개소에서 최대 5개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내 쇼핑센터 1곳이 신규 입점 후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판단
- 수원시 인구, GRDP(지역총생산)를 고려할 때, 특례시와 광역시 간 비교결과 선정
 - 특례시 간 비교 시 비교집단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 특례시와 광역시 간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수준 비교 결과에 따라 유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적정 소비자 편의 수준 제공
- 특례시와 광역시 간 비교결과 전체 대규모 유통시설은 약 2개소가 많으며 대형마트가 약 2개소, 복합쇼핑몰 및 쇼핑센터의 경우 약 1개소가 더 많은 상황

제4장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정책 방향

제1절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정책 현황

제2절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방안

제1절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정책 현황

1. 국외 대규모 유통시설 정책 현황

□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일본 규제정책

- 대형 소매점의 출점 제한과 지역 상권 보호 목적으로 1973년 대규모소매점포법(大規模小売店舗法, Daitenhou)(이하 대점법)을 제정
 - 대규모점포법, 대점입지법, 도시계획법, 상조법 등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 지역발전 전략, 공정거래, 신규설립 및 확장 시 정부의 허가, 주변 지역의 환경 및 교통여건에 따른 입지선정 등을 포함한 출점 규제 실시
 - * 사전심사신고제, 점포면적, 개점일, 영업시간, 휴업일 등으로 규제
 - 초기 점포면적 1,500㎡ 이상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우회 출점 증가로 79년 500㎡ 이상 점포 규제 대상 추가
 - 사전심사신고제를 통해 점포면적, 개점일, 폐점 시각, 휴업일 조정(사실상 규제)
- 2000년 이후 경제구조개혁, 규제 완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점입지법(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이하 대점입지법)을 새롭게 제정
 - 입점제한 및 영업시간, 휴일 일수에 대한 규제가 축소되었으며, 교통정체, 소음문제 등 대규모 소매점포 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 제시 필요
 - 대규모 소매점 입점에 따라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대점입지법에 주요 골자
 - 중소소매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점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후생 증진을 위해 출점 신고제로 변경
 - 1,000㎡ 이상의 대형 소매점 신증설 시 주민 의견 수렴, 조정 권고 등 절차를 통해 교통, 주민 편리성, 생활환경 보호 등 고려 사항 규정(고바야카와 사토루, 2005; 임준홍, 2012)
-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지역 차원에서 상점가에 대한 정비와 개선을 통해 상점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
 - 대형 유통업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50년대) →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원(60년대) → 외국계 대형점포로부터 지역 상권 보호(70년대)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상점가 역할 강조(90년대) → 지역 상권 정비개선(2000년대 이후)

□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프랑스 규제정책

- EU에서 대규모유통업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사업 조정 중심의 규제 철폐
- 로이에법(La Loi Royer, 1973): 대형점포와 중소소매점의 경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신설 시 지방 당국 허가 필요
 - 인구 4만명 이상 1,000m², 4만명 미만 1,500m² 점포면적 규제 대상
- 라파랭법(La Loi Raffarin, 1996): 대형마트 영업 시간 및 일요일 영업 제한, 일정 크기 이상 소매점 신설 시 지방 당국 허가
 - 연면적 300m² 이상의 점포(호텔, 극장, 영화관 포함) 규제
 - 1,000m² 이상 유통매점 신·증설시 지역상업시설위원회 허가
 - 6,000m² 이상 점포 신·확장 시 소매점 설립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 및 공청회 의무화
 - 상권 범위설정, 상주 인구변화, 교통접근성, 에너지사용, 오염발생, 조경과 생태계 등 심사(위원 : 6명, 심의기간 : 4개월)(임준홍, 2012)
- 경제현대화법(2008): 인구 2만 명 이상일 때 1,000m² 이상으로 상향, 인구 2만 명 미만일 때 300~1,000m² 이하로 규제 축소
 - 유럽위원회는(EC)는 프랑스에 대해 매장면적 상한을 하향조정(1,000m² → 300m²)한 라파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프랑스 내 규제 완화 요구
 - * 2005년 7월 5일 유럽공동체조약 제43조 및 49조에 의해 존중받아야 할 사업소 설립의 자유 및 서비스 제공의 자유원칙 위배 지적
 - * 2006년 12월 12일, 2006년 12월 13일에 유럽위원회는 유럽위원회 공동합의 사항을 따르지 않는 규제 비판(한종길, 2009)
- 2017년부터 마크롱 법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일요일 영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영업시간 규제 및 일요일 영업 허용
 - 파리의 샹젤리제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12개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 휴무 없이 영업 가능
 - 칸·니스 등 지중해 주변 관광도시는 국제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주7일 자정까지 영업 허용 (한국경제연구원, 2017)

□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영국 규제정책

-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을 위해 법안 PPG6와 PPG18을 통해 대형소매점의 입점 규제
 - 대형점 신증설 관리(PPS6), 소매점과 상업시설 개발(PPG18)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도심 출점 시 지자체 도시계획상 사업계획허가 획득 필요(임준홍, 2012)
- 소매영향평가 (RIA : Retail Impact Assessment)는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형 소매점의 신규 출점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지역 경제 영향 평가
 - 새로운 대형 소매점이 지역의 기존 소매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가
 - 소규모 상점의 생존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소매 공백(Retail Void)
 - 새로운 소매점 출점으로 인해 기존 상점의 폐업 및 빈 점포 증가 가능성 평가
 - 교통 및 접근성
 -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및 대중교통 접근성
 - 사회적 영향
 - 대형 소매점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가
 -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와 생활 편의성 향상 등 긍정적 측면과 소규모 상점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고려
 - 환경 영향
 - 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 녹지 공간 훼손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
- NPPF(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로 대규모 소매 시설의 입지선정 지침
 -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보호와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하여 국토 계획 및 개발 정책에 관련한 지침을 두고 있음
- 시장청(CMA)은 대형마트의 시장 독점(인수합병) 규제
- 종교활동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280m² 이상의 소매점포의 경우 일요일 영업시간 규제

□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독일 규제정책

- 도시건설법 제정으로 연면적 1,200m², 전용면적 800m² 이상의 대규모 소매 시설 허가 규제
 -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건설법을 제정하고 연면적 1,200m², 전용면적 800m² 이상의 소매 시설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
 - 1,200m² 이상의 대형유통점의 입지 가능 용도지역 제한(주요지역과 기타특수지역으로 한정 건축물이용령 제 7조 및 제 11조)
- 기존 상권의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입점 금지
 - 주요 판매 종목 매출액 10% 감소, 비주요품목 매출액 20% 감소 시(소매유통업칙령)
 - 베를린 : 주변 상가의 매출이 1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 시 출점 허용
- 대형유통업체가 매입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경제제한금지법)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요일 및 공휴일 영업 금지(임준홍, 2012)

□ 해외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완화 흐름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글로벌 선진국의 유통규제 현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추세
 -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 1인 가구 증가, 인구감소 추이 등을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유통산업 정책 요구 확대로 연결
- 일본의 개정된 대규모점포입지법은 대규모점포의 출점에 대해 신고제로 운영하며, 진입 규제 및 영업시간 규제가 없으며, 교통 환경과 지역 상권 개선이 목적
- 영국은 오히려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심 외 지역에 2,500m² 이상의 점포가 입점될 경우 도심 내 공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프랑스도 경제현대화법을 통해 기존 허가 기준 300m²에서 1,000m² 이상 점포로 규정하면서 유통규제 완화

표 4-1 | 국내·외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규제사항 비교

국가	입지구제	출점규제	영업규제
독일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규제(도시계획법) 연면적 200㎡ 이상 유통시설은 허가(연방건축법)	입지구제에 따름 기존상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지자체별로 자율규제 주중: 24시(대부분의 주) 토요일: 24시(일부 주 시작) 일요일: 폐점 원칙
일본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규제(도시계획법)	등록제(1,000㎡ 이상)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주민설명회 절차	없음
영국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규제(도시전원계획법)	입지구제에 따름	주중: 없음 일요일: 10시~18시까지(총 6시간 이내)(일요일거래법)
프랑스	지역성격에 따라 설립규제(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법령)	면적 1,000㎡ 이상의 유통점 산·증설의 경우 상업 도시계획위원회 허가(경제현대화법, 2009) 면적 6,000㎡ 이상 점포신설 및 확장시 소매점 설립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 및 공청회 의무화(라파랭법('96))	주중: 없음 일요일: 폐점 원칙(노동법)
한국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규제(국토계획이용법)	등록제(3,00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별로 자율 규제 주중: 24시~08시까지 일요일 포함해 매월 1~2회 의무휴업(유통산업발전법)

2.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현황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정
 -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24년이 되었으며, 2012년 4월 22일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
- 대규모 유통시설이 조성되면서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간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대응방안이 포함
 -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하여 2012년 1월 17일 심의·의결되었으며, 2012년 4월 3일 시행령이 심의·의결됨
 - 대규모 소매점이 인근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유통시설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유통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
 - 온라인 채널 이전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홈쇼핑을 통한 구매가 확산되었으며, 이후 인터넷 쇼핑, 새벽배송 등 무점포 형태의 유통채널이 등장
- 최근 유통시장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 내 SSM(Super Super Market) 출점 확대
 - SSM : 대형 유통업체가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300~3,000㎡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

표 4-2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동향

연도	내용
2010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SSM신규 출점 제한
2011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전통시장 1km 이내)
2012	• 영업시간제한(0-8시), 의무휴업(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도입
2013	• 영업시간 제한 연장(0-10시), 의무휴업일자 명시(매월 2회)
2014	•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계획 예고 의무
2015	•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 유효기간 연장
2016	• 대규모·준대규모점포 개설 예고 영업개시 60일 전까지로 강화
2018	• 대형마트 의무휴업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21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2024	• 21대 국회 의무휴업(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규제 완화 •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안) 폐기 • 현행법상 의무 휴업일 조정과 영업시간 제한 지자체 조례 개정(서울 동대문구·서초구와 부산·대구·청주 등 76곳)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는 입점규제와 영업규제로 구분됨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점 규제 실시
 -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500m에서 → 1km로 확대
 - 대규모 유통시설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
 - 당초 대규모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와 SSM에 월 1~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음
 -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는 사업장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 대상 제외
-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유통시설(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및 ‘유통시설 총량제’를 제정하였으나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결
 - 행정소송 시 지자체장 업무지침에 의한 제한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패소 사례 계속

표 4-3 |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도입(경기연구원, 2016)

연도	규제 조항
2010년	• 전통상업보존구역신설(전통시장 인근 500m)
2011년	•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전통시장 인근 1km)
2012년	•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도입 - 매일 0~8시 영업 금지(새벽배송 불가) - 매월 의무휴업일 1~2일 지정
2013년	•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확대 - 매일 0~10시 영업 금지(새벽배송 불가) - 매월 의무휴업일 2일 지정 • 대규모점포 출점시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권 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통과 절차 의무 • 대규모점포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계획 예고 의무
2015년	•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2020년 11월까지 5년 연장
2016년	• 대규모점포개설 예고, 영업개시 30일에서 60일 전까지로 강화
2020년	•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2025년 11월까지 5년 연장
2020~2021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으로 확대 - 규제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반경 1km→20km로 확대 - 규제 기간 영구화, 등록제 허가제로 전환
2022년	• 지역상권법시행 (지역상인과 임대인 2/3이상 동의 시 프랜차이즈 직영점 허용)

표 4-4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사항

조항	내용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p>①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p> <p>-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p>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적용 한계

- 우리나라는 시장자유주의를 채택하고 헌법 제119조에서 경제 자유화와 민주화를 원칙으로 사유재산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 보장
 -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 적정한 소득의 분배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선택권 등 헌법적 가치 훼손 금지
 - 규제는 사유재산제, 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 등 본질적 가치 준수
 - 규제 효과 대비, 대형마트 및 소비자 등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3자적 규제
- 대규모 유통시설 가격규제(price regulation) 불가
 -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 경제적 자유 침해
- 대규모 유통시설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제한 한계
 - 충북 청주시(2008), 전북 정읍시(2008)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유통시설 진입규제를 통한 시장참여 제한은 영업의 자유 침해(지자체 패소)
 - 충청남도에서도 2012년 3월 천안시를 시작으로 도내 7개 지자체가 조례 마련·실행에 들어갔으나, 동년 7월 대형마트 및 SSM이 동 조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동년 8월부터 종전 방식으로 영업 재개(충남연구원, 2013)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규모 유통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등록 절차 후 점포를 개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서만 가능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에 대한 등록제도의 운영법 제8조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법 제13조의 3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일부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무 조항이 아닌 상황
 -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규모 소매점 개설 규제
 - 중소유통업체 균형 발전 저해 시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 가능

3. 지자체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현황

□ 지자체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규제

-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는 전통시장 회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짐(서용구, 2007)
 -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법적 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지자체와 대기업 간 법정 분쟁 후 지자체의 패소로 이어지는 경우 다수
-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3년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시설 신규입점 제한 성공적 운영
 - 대규모 점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5개년 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통시설 감소에 따른 고객 편익 및 유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총량제 규정 일몰
- 타 시도의 경우 대규모 유통시설의 신규 입점 대신 폐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련 규제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
 - 대규모 점포에 대한 총량 수준 감소에 따라 기초지자체 76곳(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약 33%)은 휴일 영업제한에서 평일 영업제한으로 변경 추진 중
 -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축소 대구광역시에서는 주말 영업 제한에서 평일 영업 제한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
 - 대전광역시도 2022년까지 대규모 유통시설 총량제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대규모 유통시설 폐점으로 소비자 편익 및 지역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축소하기 위한 논의 중
-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이후 주변 상권의 변화와 공존이 이어진 상황으로 조성된 대규모 유통 시설 폐점은 소상공인의 피해 연결 가능
 -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이후 입점 초기 소상공인 간 경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후 주변 상권이 형성되면서 폐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 축소/피해 역시 예상되는 상황

표 4-5 | 이전 지자체 대규모 점포 규제 현황

지역	이전 규제사항 및 내용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 반면,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현행 동일 수준)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 진주 밀양 등 대형마트와 SSM 규제 조례안을 의결하고 공포,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0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규정, 이외 양산시는 휴일이 아닌 평일 2회 휴무(현행 동일 수준)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점포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준주거지역내 입점 제한 (2004.5.14.) •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통한 입점 제한, 1차 (2003.7~2007.12) 입점 제한 • 준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점과 상점 3,000㎡ 미만 제한 • 이후 2차 (2008.1~2012.12) 개정에서는 상권에 대한 파급효과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입점 규제 일부 해제(지자체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계획 및 추진)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대형 유통점의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준주거지역도 3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축소 • 준공업지역에서도 바닥면적 1000㎡ 미만만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제(입점 제한)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거지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아예 들어설 수 없으며, 준주거지역은 시지역(1000~3000㎡미만)과 군지역을 모두 1000㎡미만으로, 근린상업지역은 시지역과 군지역 • 모두 3000㎡ 미만으로 조례 개정(입점 제한)
청주, 여수, 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제한 • 소매점과 상점 영업 시설 3,000㎡ 미만 제한(입점 제한)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일반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2,000㎡ → 1,000㎡ 축소(입점 제한)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유발 부담금 상향조정(간접 규제)

□ 지자체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및 영업 규제

-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 단계에서의 규제 방법, 입점 후 대규모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 등 규제 시도
- 이전 대규모 유통시설에 관한 규제 사례 탐색 결과,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영업 규제 및 입점규제 한계 명확
-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행정규제에 따라 대기업에서 제기한 법적 소송 결과는 지자체의 패소 사례가 다수
- 당초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이 시군구의 조례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동 규제는 무효화
 - 유통산업발전법(제3장 12조2)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명시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명시하면서 대규모 유통시설과 지자체 간 법적 분쟁 이후 실제 지자체의 역할 약화

□ 지자체 대규모 유통시설 영업 규제 사례

- 대규모 유통시설 영업규제를 위한 법원의 판결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가 존재
-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주말 및 야간 영업금지에 대한 강동구와 송파구 조례 위법 판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 불가
-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휴업 지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지자체의 위반소지로 판결(장교식, 2012)
 -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시

□ 지자체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도입 적정 사례

○ 대전광역시 대규모 유통시설 총량제 수립

- 대전광역시는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4차례(1차 2003~2007년, 2차 2008~2012년, 3차 2013~2017년, 4차 2018년~2022년)에 걸쳐 대규모점포 입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음(대전세종연구원, 2017)
- 현행법에서 ‘유통시설 총량제’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음
- 법적 근거와 기준 부재 속에서도 상생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에 따라 방침 방안 조정
 - 대규모 점포 수준과 현황에 따라 지자체 방침 적용
 - 이후 대규모 유통시설 수 감소 및 정책 조정

○ 대전광역시 대규모 유통시설 관리 방안(3차)

- 유통시설총량제 계획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신규 입점 불허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점포 수, 최초 등록 매장면적 유지
-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규제

○ 대전광역시 대규모 유통시설 예외 사항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조건부 입점 허용
- 유통시설 밀집도 개선
- 낙후지역 쇼핑편의 제공
-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대규모 주거단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 및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터미널 개발 등)에 따라 상권침체지역 활성화 도모

○ 대전광역시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

- 주요내용 : “유통시설총량제”에 따라 대형마트 신규 입점 불허
- 추진근거 :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자체 수립)

※ 현재 해당 사업은 일몰

- 대전광역시 대규모 유통시설 관리 전략
 - 1차 계획 (2003~2007년)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000m² 이상 판매시설 입점 제한
 - 도시계획조례로 준주거지역 3,000m² 이상 판매시설 입점 제한
 - 2차 계획 (2008~2012년)
 - 유통시설총량제 도입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점포 수 유지
 - 최초 등록 매장면적 유지
 - 3차와 4차 계획 (2018~2022년)
 - 신규 대규모 점포 입점 및 영업면적 제한 지속
 - 공익적 목적에 한해 백화점 신규 입점 허용
- 대전광역시 대규모 유통시설 관리 방안
 - 유통시설총량제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신규 입점 불허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점포 수, 최초 등록 매장면적 유지
 -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규제

표 4-6 | 대전광역시 5개년 계획(대전세종연구원, 2017)

구분	규제대상	주요규제 내용
1차 (‘03~’07)	백화점, 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000m² 이상 판매시설 입점 제한 - 도시계획조례로 준주거지역 3,000m² 이상 판매시설 입점 제한
2차 (‘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점 제한 - 최초 등록 매장면적 유지
3차 (‘1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입점 및 영업면적 제한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신규 입점 제한 지속 - (백화점)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신규 입점 허용
4차 (‘18~’22)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서 매장면적의 합계는 연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닌 매장의 면적의 합 의미

- 매장면적 = ①상품판매(도·소매) 면적 + ②용역제공장소(서비스제공) 면적
- 영업장 면적 = 매장면적(①+②) + ③공동사용시설면적
- 건물 연면적 = 건축물의 각종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①+②+③+기타 창고 및 주차장 등)

- 매장면적이란 ①판매(도·소매)에 사용되는 면적과 ②용역의 제공장소 면적의 합계이며,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란 판매면적 + 용역제공장소 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의미

○ 현행 대전광역시 대규모 유통시설 관리 방안

- 조건부 이전 입점 허용
- 유통시설 밀집도 개선
- 낙후지역 쇼핑편의 제공
-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대규모 주거단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 및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터미널 개발 등)에 따라 상권침체지역 활성화 도모

□ 지자체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분쟁 사례

-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하여 대기업 행정소송 제기 시, 지자체 재량권 남용 판결로 입점 제한 및 규제에 대한 한계 존재
- 일부 지자체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허가를 불허하고 입점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많은 지자체가 패소 사례 있음(충북 청주, 전북 정읍 등)
 - 울산 북구에서는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막기 위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으나, 구청장 법적 기소 조치 후 입점 운영 중
 - 미국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는 2010년 8월 울산 북구청에 건축허가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세 차례 허가 반려
 - 상급기관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 허가 의무 이행 요구도 두 차례 거부 후 구청장 고발 및 검찰 기소 조치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대규모 유통시설(신세계 이마트) 입점 분쟁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건축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승소
- 이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롯데마트)의 입점 분쟁의 경우 2심 판결까지 패소 후 지자체 3심 상고 포기, 입점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 패소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대규모 소매점(마트킹) 입점 시 이른바 쪼개기 편법으로, A동의 매장 면적은 997㎡, B동은 999㎡, C동은 998㎡ 등 3개 동 모두 1천㎡ 미만으로 구성
 - 매장 신축 이후 동의 1·2층을 각각 잇는 4개의 연결통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성편법 건축하고 현행 3천㎡ 이하로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대상 제외
 - 대규모 유통시설 기준에 약 53㎡ 부족한 2천937㎡ 으로 의무 휴업 대상 면탈 운영

- 건축법 시행령상 매장(바다)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그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
 - 1천㎡ 이상 시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인 판매시설로 규정해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필요
 -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수시점검 역시 제외 대상
- AK프라자 수원점은 AK푸드홀과 슈퍼존을 개점하면서 2천937㎡ 규모의 식당가 ‘AK푸드홀’과 1천155㎡ 규모의 ‘슈퍼존’으로 나눠 대규모점포 개설 평가 없이 꺾수 개설
-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필요
 - 면적이 165㎡ 이상 3천㎡ 이하일 경우 준대규모점포로, 3천㎡ 이상일 경우 대규모점포 규정

표 4-7 |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관련 분쟁 사례

지자체	사례	주요규제 내용
전북 정읍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대규모점포의 건축허가신청 불허 -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라는 공익은 상인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사항, 대형마트 진입을 전면 차단 조치는 적절치 않음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상 필요(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
	법적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정읍시 패소)
충북 청주	법적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청주시 패소) 충청북도 경제 55160-429(2003. 3. 12.)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점 입점에 따른 업무개선지침 (※ 현재 해당 지침은 폐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시설총량제”에 따라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을 불허 - 시·군별 인구 15만 명당 1개소 입점을 원칙으로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 - 대규모 점포 입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에 해당
광주광역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유통시설 건축허가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승소의 경우 건축허가 단계에서 발생한 용도지역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 - 부지 용적률과 전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패소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입점 규제가 시행된 것은 아님 - 이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의 경우 부지에 대한 결정사 유가 없음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2심까지 패소 후 항소 포기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미충족
	법적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광주광역시 승소)

제2절 수원시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방안

1.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규제 적용 한계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 점포 수 조성 관리 필요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수인 상황에서 현행 규제유지 방안 통한 적정 점포 수 관리
 - 수원시는 타 시도 대비 대규모 유통시설이 다수 위치한 상황으로 이로 인한 과다 소매유통업 경쟁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
 - 수원시 내 소매유통업 종사자가 집적화된 전통시장 현황 역시 다수인 상황
-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영업시간과 영업일 등 규제 축소 방안보다 우선적으로 적정 점포수에 조성을 목표로 수원시 소매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배송, 인구감소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자연 감소 움직임을 고려할 때, 수원시 소매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점포 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대규모 유통시설 적정 점포 관리를 위한 규제 적용 한계

- 신규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는 현행 지자체 단계에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입법을 통한 방법의 경우 변화된 유통산업으로 현황으로 추진 동력 미비
 - 이미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야간 온라인 배송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축소 등 규제 축소 움직임 다수
- 사회·경제 상황과 유통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타 시도의 경우 현행 신규 입점 대신 폐점 증가
 -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축소 대구광역시에서는 주말 영업 제한에서 평일 영업 제한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
 - 대전광역시도 2022년까지 대규모 유통시설총량제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대규모 유통시설 폐점으로 소비자 편의 및 지역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축소하기 위한 논의 중
 - 수원시 역시 대규모 유통시설 중에서 대기업 대형마트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

□ 유통산업발전법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방안 유지

- 지자체 단계의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신규 규제의 한계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기존 규제를 보완하고 기존 대규모 유통시설의 확장이나 편법을 막는 방안 선행
 - 신규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입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 방침 수립 필요
 - 수원 AK몰, 마트킹 사례와 같이 기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입점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와 동시에 영업허가 불가 방침 수립
- 타 지자체에서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입점 및 영업 규제 추진 결과 지자체 패소 결과가 다수인 상황이며, 무리한 규제는 현행 유통 산업 흐름에 역행
 - 현행 수원시 내 신규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입점 규제를 적용하여 무리한 정책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현행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
 - 현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정책 및 산업 동향의 추이에서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에 대한 무리한 신규 규제는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소매유통산업에 대한 급격한 정책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는 지역 유통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

※ 현행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개정 2011.05.04.)

-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05.04), (개정 2011.11.10) (개정 2013.11.1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02.12.)

제16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개정 2013.11.12.)

-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01.10) (개정 2013.11.12.)(개정 2019.12.31)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개정 2013.11.12)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03.30)(개정 2013.01.10) (개정 2013.11.12)

2.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상권 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강화

- 유통산업발전법 내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에 따른 관련 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평가를 위한 관련 기관 전문가를 위촉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변경등록 시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전략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점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 필요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따른 적절한 대규모 유통시설 운영 여부 감시 및 모니터링 필요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거짓으로 작성함이 명백한 경우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허가 제한 필요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내용에 따른 검토 및 보완사항
 -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사항 점검
 -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내 일자리 창출, 지역 취약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 간 협력 및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작성 필요
 - 검토사항 검증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출처와 명확한 산출 평가 근거 제시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의 타당성 여부
 - 보완사항 검증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출처와 산출,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항목을 누락한 경우

□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허가 단계 문제점 보완 전략 강구

- 사전연구 및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한 입법 동향 확인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준대형 점포 입점을 위해 필요한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으로 많은 연구자와 국회에서 문제점에 따른 입법 요청
 - 무분별한 경쟁을 막고, 상권 보호를 위해 건설허가 단계에서부터 상권 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필요(중소기업연구원, 2017)
- 상권 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변경하려는 자이며 상권 영향평가서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검토하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상권 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지역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역할 필요
- 지역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준수사항, 이행절차, 지원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모니터링 및 이행 준수에 대한 제재 부족
 -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에 대한 적합이나 부적합 결정, 지역유통산업 영향 등 중요사항(대규모 점포 종류, 대규모 매장의 요건 및 매장면적 적정 여부, 심사 대표자의 법적 결격사유 여부) 심사절차 부족
 - 대규모 유통시설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협력방안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 영향평가서 절차는 중요도 대비 간소화
 - 지자체 및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유통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소상공인 피해 수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개선방안과 지원이 마련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상생협력 절차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 유통산업발전법 상권 영향평가서 작성 사항 강화

- 상권 영향평가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자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체가 되어 출점 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 작성
- 대·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자가 상권 영향평가서를 미리 작성함으로써, 해당 상권에 개점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기존 상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지역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도화해서 제출 의무화
- 지역자치단체장은 시장경쟁논리를 통해 입점하려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상권 영향평가서 분석내용은 출점 범위와 해당 상권 지역 내 주요 교통, 인구, 집객시설, 기존 사업자 업종분포도 등 인구의 이동, 주요 소비층, 신규 건축물의 공급, 기존 개폐점에 따른 사업장의 변화 시기 등

□ 유통산업발전법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사항 강화

- 지역협력계획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자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주체가 되어 개점 시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업체 간의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활동, 소상공인 간 상생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기여 방안
- 지역협력계획서의 사업계획 내 작성 내용은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협력 계획 등에 대한 방안
 - 지역 상생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지자체 간 공동 소매 유통 활성화 방안 제시

□ 대규모 유통시설의 지역상생협력 강화 방안 도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자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 상생과 지역 협력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필요
 - 대규모 유통시설과 지역 유통시설 간 협력 방안 준수에 대한 검증 및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해당 계획이 적정하게 이수되고 있는지 검증 필요
- 대규모 유통시설 간 협의를 통해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유통업 종사자와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의 영업 성과 개선 활동 지원
 -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바와 같이 대규모 유통시설과 소매 유통시설 간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상권과 대규모 유통시설 간 협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
 - 지역 소매 유통시설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 상권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동, 고용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인력 채용 확대), 지역사회 공동 마케팅 및 행사(지역 상품 취급 확대), 중소기업 판로 지원, 매장 및 주차장 지원, 그 밖에 지역사회 공헌 등이 가능하도록 유통업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 협의 필요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점포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3. 18.>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⑦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상권 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보완 절차 방안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지자체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심사 및 의결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항목 명문화, 해당 항목별 요건에 대한 실효성 평가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따른 연차별 추진전략 및 성과 환류 모니터링 필요
 - 지역상권 활성화 실효적인 방안 제시, 평가방안, 추진 상황 모니터링, 환류 단계적 수행
- 이외에도 인접 지자체 간 입점허가 논의를 위한 협의회 조성, 소상공인과 대규모 점포 간 상권협의체 조성, 지역상생을 위한 지원방안 이행사항 점검
-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실한 이행 여부 확인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외 주민공청회, 소상공인 간 협의체 조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

표 4-8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절차 강화

절차	방안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항목 명문화 및 작성사항 보완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및 주민 참여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공청회 개최 - 대규모 점포 상권 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의견 수렴 후 보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최 - 관계자 및 전문가 대규모 점포 지역상생 방안 논의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전문기관 의뢰 평가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유통시설 실효 방안 마련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제5항에 따라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대규모 점포 간 상생방안 협의체 조성 - 소상공인 참여 지역 상생 이행사항 점검 공동 모니터링 - 연차 별 성과 및 추진사항 환류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규모 유통시설 정책 조정(3년) - 지역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점검 후 정책 수정/보완

3. 지역 골목상권 조성 지원

□ 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필요

○ 골목형 상점가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상점가 경쟁력 강화

- 정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통한 상점가 주변 환경 개선과 디지털 고도화를 통한 판로확대, 전기, 수도, 소방 등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 현대화, 주차장 지원사업, 온누리상품권 취급, 경영현대화지원사업 등의 정부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을 할 수 있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대규모 유통시설 폐점에 따른 상권 붕괴 대응

- 사전 연구결과 대규모 유통시설에 폐점은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수 상점가 밀집 지역 내 소상공인 간 연계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표 4-9 | 2024년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현황

지정명	지정주소
화성행궁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일대
연무상점	수원시 장안구 연구로 56번길 30
호매실 중심상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13-4, 1113-5, 1118, 1118-1, 1118-3, 1118-6
영통역 아이파크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5번길 30

□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조성 지원 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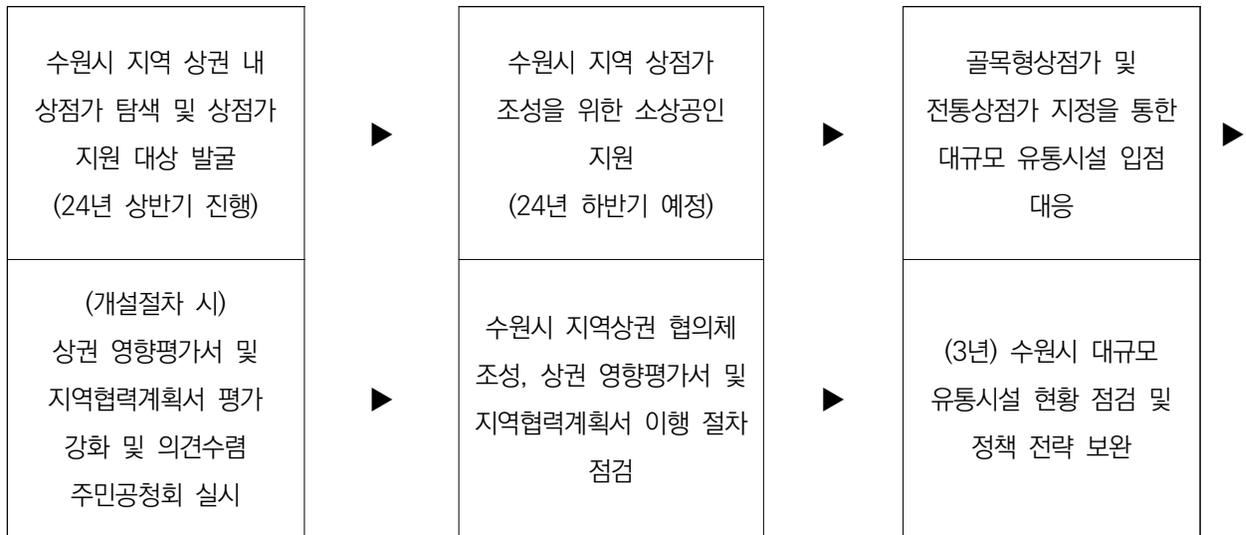
○ 전통시장법의 변경으로 골목상권의 다수 상점가 집적지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지원영역 편입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로 명시되면서 도소매업, 용역서비스업 외 음식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 모두 가능토록 개정
- 먹자골목, 음식거리 등이 전통시장특별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2020년 8월 12일 이후, 전통시장특별법의 지원대상으로 편입 가능

□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절차 보완

- 2천 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으며, 상권 내 상인의 3분의 2이상, 토지주 및 건물주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 골목형 상점가 등록 추진 절차 : 상인조직 구성 -> 지자체 상인회 등록 -> 등록요건 구비 및 준비 -> 지자체 골목형 상점가 등록 신청 -> 지자체 검토 및 등록 등
-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를 발굴하고 등록절차 및 과정에 대한 지자체 지역 상권 조직 형성 지원
-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전문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공모 사업운영 과정 지원

표 4-10 | 수원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지자체 대응 방안



□ 골목형 상점가 지자체 지원 전략 고도화

- 타 지자체의 성공적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방안을 참조하여 수원시 골목상권 개발 전략 수립 필요
- 상권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역량 강화, 문화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 상인회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지자체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초기 지자체 지원 필수

표 4-11 | 지역 상점가 지원 성공사례

지자체	사업명	내용
서울특별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마케팅 비용 지원, 상권 개선 사업, 상권 홍보, 지역 행사 기획, 상인 교육 프로그램, 경영 컨설팅 등 • 마포구 서교동의 '연남동 상권'의 환경 개선과 축제 지원
부산광역시	골목형 상점가 육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지역에 재정적 지원 제공 • 상권 환경 개선, 관광 자원과 연계된 마케팅 지원 • '광복동 문화관광형 상점가' 지역 특화 상품 개발과 이벤트 개최, 상점가 공용 브랜드 개발, 상점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대구광역시	골목경제권 육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경제권으로 지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 정비, 청년 창업 지원, 문화 콘텐츠 결합,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마케팅, 스마트 상점 운영 등 지원사업 운영 • 예술가들이 협업한 '김광석 거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마케팅과 판로 개척, 경영 자문 제공 • 소상공인 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하는 공동체 개발 •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은 상인회 협력을 통한 전통시장과 신형 상권 간 공동 마케팅 실시
충북 청주시	골목상권 활성화 및 환경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의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디자인, 벽화 그리기, 공공시설 정비 등 실시 • 특색있는 상권가 조성 지원을 위해 청주 성안길 상점가의 환경 개선과 거리 공연, 지역 축제 개최

※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기준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단서조항 : (장소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일 것

나.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는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라.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①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밀집도: 4천제곱미터 이내의 경우 60개 이상, 6천제곱미터 이내의 경우 90개 이상)

②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특성업종도소매점포)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등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위 나.에 따른 점포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 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

※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하여 규정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하여 완화

제5장

정책제언

-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규제 및 입점규제 지속 적용을 통한 대규모 유통시설 확장 제한 필요
 - 대규모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신규 입점 불허 유지
 - 타 시도 대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이 다수인 상황에서 규제를 축소하는 것은 소매유통시장 내 경쟁 가속화
 -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업 및 폐점시간 축소 규제에 대한 축소 혹은 폐지 현행 수준을 당분간 유보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법 내 규제 유지가 필요
 - 대규모 유통시설 업종 변경, 분할 입점 등 우회 영업 전략 불가 방침
 - 지자체에서는 신규 입점 및 유치를 최소화하고 기존 영업시간과 영업일에 대한 규제 지속
 -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입점을 최소한으로 추진
 - 3년간 해당 정책의 유지 후 유통시장의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방안 논의 필요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의 감축이 예정된 상황으로 지역 유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
 - 지자체 수준에서 강력한 입점 제한에 대한 한계가 있으나, 신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입점제한 방침을 통해 추가 입점 최소화
 - 현행 대규모 유통시설 감축 및 확대 최소화를 목표로 3년 뒤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 진단에 따른 신규 정책 적용
 - 1인 가구 증가, 소비패턴의 변화, 구매 채널의 다양화 등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강화와 상반되는 직접적 규제 전략은 향후 수원시 유통산업에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
 - 기존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지역 내 추가 입점 제한 방침과 현행규제를 유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소매유통산업 보호 필요
 - 유통산업발전법 내 대규모 유통시설을 편법으로 입점하거나, 기존 점포의 확장이나 증축을 통한 추가 입점에 대하여 제한
 - 현행 점포 수 유지 및 매장면적 확장 불가
 - 대형마트 신규입점 필요 시 기존 점포 폐점 조건부 대형마트 입점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회피를 위한 업태 변경 제한 및 지자체 관리

※ 공익적 목적의 경우 규제 논의 필요

-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입점 여부 판단
- 도시개발 연계 사업(역세권, 터미널 등)
- 상권침체 및 낙후지역(반경 3km 내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이 안된 경우)
- 기존 대규모 유통시설의 폐점을 조건으로 상권침체 및 낙후지역 내 신규 입점하는 경우

□ 대규모 유통시설 폐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상권 부정적 영향 가능성 대비

- 대규모 유통시설이 입점하면서 서서히 주변 서비스업, 외식업, 소매업 등 주변상권이 확대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유통시설의 폐점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상권에 직접 피해
- 대규모 유통시설 중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생활 필수품 중심 소비자 물가)가 더 낮은 상황(한국경제연구원, 2015)
 - 수원시 소비자에게도 대규모 유통시설의 폐점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존 대규모 유통시설의 규제는 소상공인 이익을 흡수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대규모 유통시설과 소상공인 간 밀접한 상권이 조성됨에 따라 폐점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로 주변 상권의 공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대규모 유통시설 폐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고객 유치방안 사전 마련 필요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신규입점 절차 및 준수사항 점검

- 복합쇼핑몰 및 쇼핑몰 조성을 위한 상권영향계획서, 지역협력계획서 구체화 방안 수립 및 연차별 지역 상생 추진사항 점검
 - 주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단 위촉 및 지역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 설명회 등
-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한 입점 당위성 확인과 해당 계획 실현 가능 여부 확인
 - 규제 실효성과 지자체의 패소 사례에 따라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탐색하여 문제해결 방안이 논의 필요
- 복합쇼핑몰 및 쇼핑몰 조정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상향 적용 검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하향 조정 가능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산출: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축소 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정책 전환 필요

-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고령층 증가 등 다변화되는 사회구조에 따라 타 지자체 내 대규모 유통시설이 축소되면서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 필요
 - 타 지자체에서는 경쟁력을 잃은 대규모 유통시설이 단계적으로 폐점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보다 축소/폐점이 예상
 - 수원시 역시 대규모 유통시설 중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포가 축소될 계획으로 시기 적절한 대응을 기반으로 유통 산업 축소 및 소비자 편익 축소 상황에 맞춘 정책 대응 필요
-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낙후 지역 등을 고려한 입지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 수요에 따라 적절한 입점계획을 통해 도시 정주여건 개선, 협력적 유통 상권조성 필요
 -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입지구제의 경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신규 대규모 유통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과잉 지역의 입점 점포를 축소하고 신규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민 편익 및 지역 상권 효율화 마련

□ 수원시 유통산업 구조 다각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지원

- 골목형 상점가 조성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및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합회를 조성하고 상점가 사업기획 수립
 - 지자체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TF조직을 운영하고 관련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유통업상생협의회 등 지역 유통시설 간 상호 협력과 문제해결 방안 논의
 - 지역 유통업계가 상호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유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유통업상생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유통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 필요

□ 수원시 소상공인·대규모 유통시설 간 상생을 위한 전략적 공조방안 마련

- 대규모 유통시설 의무 휴업일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간 중 수원시 소비자의 전통시장 구매 전환 유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홍보사업 제공
 -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전통 시장 소비 지출이 늘지 않았다는 통계 결과가 제시되는 만큼 대규모 유통시설과 전통시장 간 경쟁 구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패러다임 변화로 더 이상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는 상황
 - 주차 시설의 부족함, 노후화된 시설 등 소비자가 전통시장 방문을 꺼리는 다양한 이유를 파악하고 대규모 유통시설 간 협력방안,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고객센터 조성지원, 협력스토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요원 등 소비자 중심의 판매 전략 수립 및 지원 필요
- 소매유통산업에 지속성을 위해서는 온라인 채널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상점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공동의 방안 마련
 - 타 시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을 위한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간 협력을 통해 소매 유통상권 조성 활성화 노력(상생팝업스토어, 공동사은행사, 세일페스티벌 등)

표 5-1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문제점	현황	향후방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유통시설과 소매유통업 간 경쟁구도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규제 마련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등 유통시장 패러다임 변화 - 대규모 유통시설 축소 및 폐점 속출 - 온라인 쇼핑 활성화 및 오프라인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시장 대응을 위한 오프라인 업체 간 상생 방안 모색 - 지역 상권 중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필수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발전법 입점규제 도입(2010) - 동법 영업규제 도입(2011) - 대규모 유통시설 영업 및 입점규제 강화(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대형마트 영업 규제 부분 축소 ※ 대형마트 야간, 평일 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유통시설 영업, 입점 규제 축소 예상 (입법동향 참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유통시설 신규입점 제한 적용 -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및 영업규제 실시 ※ 법적 규제 대비 대규모 유통시설 확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 지자체 유통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형 상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확대 - 지자체/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 전략

- 가.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신규 입점 제한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의 다수 입점 현황에 따라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신규입점 제한 기조
 - 수원시 내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 필요성이 적은 상황으로 신규 대규모 유통점포 유치 제한
- 나. 유통산업발전법 내 지자체 조례 지속 유지 입점, 영업규제 지속 유지
 - 현행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다수 입점 현황에 따라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조성현황에 탄력적 정책 적용
 -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 실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현행 적절한 조치여부 판단, 유통업상생협의회 역할 강화
- 다.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간 상권조성을 통해 자생력 확보 필요
 -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폭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상인회 지원 전략 마련(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수원시 소상공인지원팀 운영 등)이 필요

※ 참조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고바야카와 사토루(2005),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대점입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교통 기술과 정책**, 2(3), 류시균 번역
- 권태구 & 성낙일 (2014),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 실증분석**, **경제분석**, 20(2), 56-91.
- 김기희 & 배진한 (2017),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17-41.
- 김범식 (2012),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125, SDI정책리포트
- 김현아, 서진형 & 조춘한 (2022),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27(1), 33-58.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6), **「프랑스 마크롱법의 주요 내용 및 파급효과」**
- 서용구 (2017),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규제효과 분석」**
- 서용구, 조춘한 (2019),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유통연구**, 24(3), 133-148.
- 서용구, 한경동, 김혜란 (2008), **대형마트 상권 포화에 관한 포괄적 연구**, **유통연구**, 13(5), 33-50.
- 서울연구원 (2021), **코로나19가 바꾼 2020년 서울시민의 소비** ||
- 신기동, 조영진 (2016),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경기연구원, 2016
- 신승만 (2014),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5(4), 123-137.
- 이기환 (2017), **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변화 추세와 시사점**, KERI Brief, 17(20), 1-16.
- 이민정 (2013),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이 정책의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리포트 재82호
- 이민정, 김양중 (2019), **지역상권내 할인마트가 소상공인 이윤에 미치는 영향: 충남사례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1(2), 1-21.
- 이상규 (2024), **대형할인점의 매출액 결정에 있어서 입지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40, **국토연구**, 35-52.
- 임춘홍 (2012), **(충남논단) 외국의 대형마트 입지조정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열린충남**, 60, 28-37.
- 정수용 (2015),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의 영향평가**, **한국정책학회보**, 24(2), 433-460.
- 정진욱, 최윤정 (2013),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분석」**, 세미나자료 13-13, 261-342, 한국경제연구원
- 정환, 임영근, 최필호 (2020), **대규모 유통업체의 출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중심으로**, **유통연구**, 25(1), 101-125.
- 조승현, 김지현, 이은지 & 박경선 (2018), **대형마트의 진입은 소형 슈퍼마켓에 위협적인가?**, **국토지리학회지**, 52(2), 177-192.
- 조춘한 (2023),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 한국유통학회, 대구광역시 발표자료
- 한종길 (2009), **프랑스의 유통업 출점규제의 성과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유통연구**, 14(5), 65-82.
- 허남길 (2016), **대규모 점포의 신설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29(2), **대한경영학회**, 341-355.
- 허성윤, 진현정 (2024),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30(1), 76-109.

신문기사 / 웹페이지 / 통계자료

공공데이터포털 (2024), 행정안전부 대규모점포, 지역지지탈협력과

대신증권 (2024), 300조 한국 유통시장 노리는 'C-커머스'가 온다, (2024.04.02.)

소상공인진흥공단 (2023), 2022년 기준 전통시장 실태조사 시장별 매출액

수원시 (2023), 재정여건 전망 및 대응방안

아시아경제 (2024), 사라진 마트직원 '1만명'... '나혼산'이 바꾼 유통지도, (2024.08.19.)

최빛나 (2024), '소비 트렌드 변했다' 대형마트 점포 7년 새 37개 감소... "본업 집중 효율성 강화", 메트로신문, (2024.05.20.)

연구책임자 강태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현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한경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근영 (연성대학교 겸임교수)
김보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
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법학박사)
전상엽 (법률사무소 수 대표 변호사)

SRI-전략 2024-21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및 정책 방향 연구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s
for Large-Scale Retail Facilities in Suwon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4년 08월 30일

발행 2024년 08월 30일

ISBN 979-11-6819-155-6(93300)

© 2024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강태욱·김현아. 2024.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